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59호 2016. 6. 9. (목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7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 2
○ 하동군 고시 제2016-71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16차) ······ 4
○ 하동군 고시 제2016-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이무*) ······ 6
○ 하동군 고시 제2016-74호 성평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시행 계획 고시 ······ 7
○ 하동군 고시 제2016-75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117차) ······ 8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16-559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1
○ 하동군 공고 제2016-560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22
○ 하동군 공고 제2016-562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동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28
○ 하동군 공고 제2016-568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47
○ 하동군 공고 제2016-614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1
○ 하동군 공고 제2016-622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5
○ 하동군 공고 제2016-640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3
○ 하동군 공고 제2016-641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8
○ 하동군 공고 제2016-642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2
○ 하동군 공고 제2016-643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7
○ 하동군 공고 제2016-644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1
○ 하동군 공고 제2016-645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85
○ 하동군 공고 제2016-646호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2
○ 하동군 공고 제2016-647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7
○ 하동군 공고 제2016-648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1
○ 하동군 공고 제2016-649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107
○ 하동군 공고 제2016-650호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2
○ 하동군 공고 제2016-651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7
○ 하동군 공고 제2016-652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2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58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성평소류지) ······ 127
○ 하동군 공고 제2016-623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공고 130

회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조정실　(055)880-2042, 행정2042

하동군 고시 제 2016-70호

지적기준점성과 고시

지적기준점성과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하 동 군 수

■ 지적도근점(설치)

기준점 번 호	토지 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3071	양보면 장암리 574	35-04-18.0552	127-49-58.3784	59.975	중부	275364.65	275966.89	2016.03.16.	철재	세계
		35-04-06.9478	129-49-55.7006			175056.35	275892.88			지역
3072	양보면 장암리 564-11	35-04-15.1272	127-49-55.9017	59.207	중부	275273.88	275904.89	2016.03.16.	철재	세계
		35-04-04.0192	129-49-53.2236			174965.58	275830.88			지역
3073	양보면 장암리 589	35-04-13.6551	127-49-43.6062	82.729	중부	275225.90	275593.75	2016.03.16.	맨홀	세계
		35-04-02.5463	129-49-40.9272			174917.60	275519.73			지역
3074	양보면 장암리 588	35-04-15.5883	127-49-43.7970	84.855	중부	275285.53	275598.12	2016.03.16.	철재	세계
		35-04-04.4801	129-49-41.1192			174977.23	275524.10			지역
3075	양보면 장암리 산220	35-04-15.6410	127-49-46.9850	85.210	중부	275287.84	275678.86	2016.03.16.	철재	세계
		35-04-04.5332	129-49-44.3067			174979.54	275604.84			지역

기준점 번 호	토지 소재	지적위성좌표/지적좌표			원점	평면좌표		설치일자	표지 재질	비고
		위 도	경 도	표 고		X	Y			
3076	양보면 장암리 산220	35-04-15.5287	127-49-49.3540	71.082	중부	275284.86	275738.90	2016.03.16.	철재	세계
		35-04-04.4204	129-49-46.6758			174976.56	275664.89			지역
3077	양보면 장암리 590	35-04-13.0040	127-49-45.2308	75.364	중부	275206.19	275635.09	2016.03.16.	철재	세계
		35-04-01.8956	129-49-42.5524			174897.89	275561.07			지역
3078	양보면 장암리 606-5	35-04-11.1033	127-49-50.0097	65.003	중부	275148.61	275756.67	2016.03.16.	철재	세계
		35-03-59.9943	129-49-47.3320			174840.31	275682.65			지역
3079	양보면 장암리 644-11	35-04-09.5688	127-49-43.2522	57.380	중부	275102.04	275839.19	2016.03.16.	철재	세계
		35-03-58.4605	129-49-50.5736			174793.73	275765.17			지역
3080	양보면 장암리 568	35-04-22.5409	127-49-51.5694	63.785	중부	275501.44	275793.25	2016.03.16.	철재	세계
		35-04-11.4336	129-49-48.8921			175193.14	275719.24			지역

하동군 고시 제2016-71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16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5. 2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죽전길 9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5.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0-11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62	20160520	20070618	산 허리의 바위들의 배치가 배의 내부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고하리 154-1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죽전길 9	20160520	20080402	살대밭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26-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은행나무길 35-142	20160520	20080402	큰은행나무로 가는길로 은행나무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569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길 24	20160520	20080402	두방산과 두방재 아래에 있어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494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179-13	2016052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52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97	20160520	20090702	세종태실지 명칭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궁항리 1362-5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남해고속도로 154	20160520	20101228	국토해양부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함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고시 제 2016 - 72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5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이 무 원	주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길 46-1
공사(점용·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1221-1(구) (인근지번 평사리 618(임))		
	면적	107㎡		
	기간	2016. 5. 25. ~ 2021. 5. 24.		
	목적	진출입로 확보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하동군 고시 제2016 - 74호

성평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시행계획 고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서 규정에 의하여 성평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하 동 군 수

1. **사업목적** : 농촌다움의 유지·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2. **사 업 명** : 성평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단계)

3. **위 치** : 하동군 고전면 성평리, 고하리, 명교리 일원

4. **사업내용**
   - ○ **S/W(지역역량강화)사업 부분**
     - **주민역량강화, 정보화구축, 홍보마케팅, 마을경영지원, 컨설팅**
   - ○ **기초생활기반확충 부분**
     - **배드리 주민 화합센터(2동) A=266㎡**
     - **배드리 주민 어울림마당 1식**

5. **총사업비** : 5,000,000천원(국비3,500,000천원, 지방비1,500,000천원)
   - 2단계 소요 사업비 : 2,200,000천원(국비1,540,000천원, 지방비660,000천원)

6. **사업예정기간** : 2015년 06월 ~ 2017년 12월

7. **관계도서배치** : 관계도서는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055-880-2548)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은 열람 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6-75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117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6. 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17-14 외 1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8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6.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146-1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월운길 285-10	20160601	20070618	이명산의 달운재 밑의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829-8, 777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길 131	20160601	20070618	옛 중국의 금릉 봉황대의 황자를 빼고 봉대로 명명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025-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317-14	20160601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169-1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동매길 16-9	20160601	20070618	동매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29-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상촌길 184-54	20160601	20070618	북천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334-1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선장길 119-11	20160601	20070618	배가 닿는 나루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산45-4, 785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상신길 129-4	20160601	20070618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57-6, 632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25-30	20160601	20070618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갈사리 594-1	경상남도 하동군 금성면 서근목길 16-6	20160601	20080402	마을고유명칭에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서근목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59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작은삼내길 96	20160601	20080402	작은삼내라는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지례리 산158-6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만지길 22-28	20160601	20080402	만지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2-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24	20160601	20090302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인촌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714-2, 1714-1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481	20160601	20090302	횡천-청암간 도로로 주 이용 도로가 청학동으로 가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909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재길 74-3	20160601	20090302	북쪽에 있는 큰 고개라고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797-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31	20160601	20090702	삼신봉과 산청군과 연결되는 삼신봉터널 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36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경서대로 1018-21	20160601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678-2, 727-18, 727-17, 683-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11-1	20160601	2009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678-1, 683-3, 727-19, 727-16, 727-2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산업로 913-1	20160601	20090710	하동IC에서 광양제철소를 진출입하는 도로로서 산업로로 부여	

하동군 공고 제2016-559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

2. 제안 이유 : 여성정책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2015. 7. 1.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9조)
   다.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6조)
   라.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제26조)
   마. 양성평등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 제37조)
   바. 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부칙)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06월 02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행복과, 전화 055-880-2313, FAX 055-8802349, yun0505@korea.kr)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 임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동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군의 양성평등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의 촉진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시책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군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군수는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을 선정하고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4조에 따라 분석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하동군 성별영향 분석평가위원회(이하 “분석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용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⑤ 제4항의 분석평가위원회는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 내에서 별도 구성한다.

제7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매년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공직 참여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치 참여) 군수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승진, 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제협력) ① 군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제개발 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교류와 연대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평화통일 과정 참여) ① 군수는 국내외 평화분위기 조성과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내외 여성 평화증진 및 통일을 위한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제17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군수는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정 양립 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①군수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복지증진)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여야 한다.

1. 저소득 한부모 가정·미혼모·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
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
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
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제21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3조 (성차별의 개선 등) ①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양성평등 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세미나, 심포지엄 등 연구 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군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및 홍보

제25조(유공자 포상)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여성 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될 수 있는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7조(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 군의회 내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과장

2. 위촉직 : 여성과 관련한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제3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사정에 따라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33(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운영) ①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동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설치·운영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하동군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하동군 양성평등위원회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동군 성희롱 예방 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6-560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2. 제안 이유 :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복지수혜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사회복지통합기금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 여건변화와 존치기간 도래에 따라 운용중인 기금의 폐지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효율화를 기하여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코져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

- 폐지되는 기금은 일반회계 전출
- 단,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존속기한 연장으로 개별 조례제정 승계운영하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하동군장학재단에 출연 목적사업을 추진한다.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행복과, 전화880-2342, FAX 880 - 2349, kjy997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 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 온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승계 운영하며,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은 하동군 장학재단에 출연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하동군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하며 잉여금은 하동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처리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지

2. 제안 이유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근거 소멸로 효력을 상실한 이 규칙을 폐지 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하동군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행복과, 전화880-2342, FAX 880 - 2349, kjy9979@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의거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 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6-565호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동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동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1.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제안 이유 :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존속기간 도래 및 하동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2016.6.22.예정)에 따른 자활기금(당초 :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설치·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조 례 】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기금의 조성(안 제2조)
○ 사업의 범위(안 제3조)
○ 지원대상(안 제5조)
○ 기금의 운용계획(안 제11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1조의 2)

【 규 칙 】

○ 시행규칙의 목적(안 제1조)
○ 기금의 지원신청(안 제3조)
○ 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안 제6조)
○ 기금의 교부(안 제7조)
○ 기금의 취소(안 제9조)
○ 기금의 운용관리(안 제1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2일까지 하동군(참조 : 주민행복과, 전화055-880-2214, FAX 880-2349, e-mail phj1425@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1부.
2.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별지서식포함) 1부.
3. 경남 타시·군 조례 설치 및 운용현황 1부. 끝.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하동군의 출연금 및 적립기금(당초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승계)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4.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 수익금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수익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의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하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군금고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하동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 받으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여금 지급방법 등 시행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00분의 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7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 차이가 있으면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 4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 시작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하동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동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신청에 따른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여된 대여자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경상남도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지원원칙) 기금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와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자활기업의 정관이나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정함)
4. 관내 거주자 중 3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1명 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업체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정보증서 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다만,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한도를 융자원금의 100분의 110이상으로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증명서류

② 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여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에 대한 절차 및 채권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대여금의 상환)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대여금의 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되, 매월 말일을 납부일로 한다.

제5조 (상환금 연체자에 대한 조치) ①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연대 보증인에게 연체사실을 통보하여 납부를 최고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 3회분의 상환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이나 연대 보증인에게 일시에 대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설립하는 자활기업의 작업장·점포 또는 사무실 등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주와 군수가 임대차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자금 신청 및 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동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 여부
2. 신청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격 여부
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

제7조 (기금의 교부) ① 기금의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지원사업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사업의 변경 및 지원금을 전용하려면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지원의 취소) 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에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지원결정에 대하여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경우
2. 지원 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시설과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 사업에 드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③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
4. 지원 사업이 공공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0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군수는 조례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의욕 고취시키고 수급자를 탈피하거나 자립을 위한 복지증진사업에 전년도 기금운영수익금 내에서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7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해당 증명서류를 붙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관계 장부 나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케 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지급대장 (별지 제7호 서식)
2. 현금출납부
3. 기관·단체별 대여금 상환카드

②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모든 사항은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 활 기 금 지 원 신 청 서

기 관 명 (법인·단체)		대표(사업)자 성 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성별)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명					
사업의목적					
사 업 개 요					

소 요 경 비 재 원 (단원 : 원)

총 사 업 비	기금신청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사 업 기 간	
사업계획서	따 로 붙 임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자활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

추 천 인 : ○ ○ ○ 지역자활센터장 (직인)

하동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3.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재정보증서 5. 기타 필요한 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나. 목　　적 :

다. 내　　용 :

라.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

(단위 : 원)

내　　역	소요금액	산 출 근 거	지원신청액

마. 소요예산 조달방법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계		
자 활 기 금		
자체운용기금		
회 원 모 금		
독지가후원금		
기　　타		

※ 기타내역 명시

바. 정부보조금(국비·도비·시비·자활기금)집행실적

(단위 : 원)

사 업 명	사업기간	보조금구분	보조금액	비 고

2.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

가. 법인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임 직 원 수					회 원 수			
회 장	부회장	감 사	총 무	기 타	계	정회원	준회원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나. 활동실적

기 간	활 동 내 용	비 고

3. 법인·단체의 법적자격구비 현황

등록(허가,신고) 일 자	등록(허가,신고) 내 용	등록(허가,신고) 번 호	등 록 기 관 명

[별지 제3호 서식]

재 정 보 증 서

○ 기금대여자 성명 :

○ 생년월일(성별) :

○ 주 소 :

○ 연 락 처 :

위 사람이 대여받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의 상환을 연대 보증합니다.

20 . . .

연대보증인 성 명 : (인)
(법인명/대표자명)
생년월일(성별)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소 재 지)
연 락 처 :

첨 부 : 1. 재산세납부증명서 1부.
2. 자본금 5억이상 소명자료 1부.(법인에 한함)

하 동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심의결과 통지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사 업 자 번 호 (생년월일/성별)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신청사업명					
심 의 결 과	전부지원		일부지원		미지원	

결 정 내 용

(단위 : 천원)

신 청					심 의 결 정				
계	소요경비재원				계	소요경비재원			
	기 금 보조금	자 체 부담금	후원금	기 타		기 금 보조금	자 체 부담금	후원금	기 타

상환기간	5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상환조건	이 자 율	연 2%	연체이자	연 7%
관계규정	자활기금지원·대여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한다.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교부신청서

사 업 자	(전화 :)
사 업 장 소	(전화 :)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신 청 금 액	금 원

신 청 내 역

총 사 업 비	소요경비재원 (단위 : 천원)			
	기금보조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 소 :
기관(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직인)
예 금 계 좌
· 은 행 명 :
· 계좌번호 :
· 예금주명 :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

1. 사 업 명 :
2. 지원금집행상황

(단위 : 원)

내 역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계				
자 활 기 금				
자체부담금				
후 원 금				
기 타				

하동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지원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표(사업)자 : (인)

붙임 1.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2. 지원금 집행내역 1부.
3. 행사유인물 및 사진 등 각 1부.
4. 각종 증빙자료 각 1부.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자 활 기 금 지 급 대 장

년 월 일	적 요	지 급 처	지 급 액	비 고

[붙 임]

경남 시·군 자활관련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현황

구분	자활 기금	사회복지 기금	기초생활 보장기금	자활 및 생활안 정자금	비고
18개소					
경남도					폐지(2015.12.10.)
창원시	○				
하동군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함안군				○	
창녕군	○				
고성군					통합기금 폐지(2013.11.8.)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합계	8개소	1개소	2개소	5개소	

하동군 공고 제2016-568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안 이유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3.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문 일부 수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일까지 하동군(민원과, 055-880-2073, FAX 055-880-2078)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무 및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임무 및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이의 신청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6-614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26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지역 확대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우리 군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16일까지 하동군수(참조 : 하동군보건소, 전화 055-880-6678, FAX 055-880-6620)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를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 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로서 군수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공원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체결한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에 관한 서류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 2016 - 622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 월 30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주차장 조례

2. 제안이유 : 감면대상 등 관련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기준 설정 및 시설기준 변경을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안 제3조)
   나. 주차요금의 감면(안 제3조의2)
   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안 제6조)
   라. 공영주차장 요금표(별표 1)
   마.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별표 2)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하동군 건설교통과 선진교통담당 전화880-2392, FAX880-250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차장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을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제3조의2제7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법인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중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설물	설치기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 (생 략) <제3조의2제7항에서 이동>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
②「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을 50% 경감한다.	②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③「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시를 부착한 자가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③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④ 배기량 8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④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의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60%를 경감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제4항으로 이동>
<신 설>	⑧「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익법인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table>
<tr><th>구분</th><th>선정 방법</th><th>납부하여야 할 금액</th><th>납부 방법</th></tr>
<tr><td>제 1 항 제1호의 경우</td><td>군수가 정하는 방법</td><td>군수가 정하는 금액</td><td>군수가 정하는 금액</td></tr>
<tr><td>제 1 항 제2호의 경우</td><td>경쟁 입찰</td><td>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td><td>3 개 월 단위로 선납</td></tr>
<tr><td>그 밖의 경우</td><td>경쟁 계약</td><td>입찰가격</td><td></td></tr>
</table></td><td>② 위탁료는 도로점용료, 사유재산 대부료, 주차수요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td></tr>
</table>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원/1구획당)

구분	1회 주차권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주차요금		가산금				
	30분까지	30분~1시간	매10분 초과	30분 단위 최대 가산금		주 간	야 간
1급지	면제	500	200	500	6,000	75,000	56,000
2급지	면제	500	100	-	2,400	30,000	22,000
비고	※ 전통시장 내 주차장은 전통시장 이용 확인 시 30분 추가 면제				※ 1일 주차 및 월정기 주차는 노외주차장에 한함		

= 비 고 =

1. 이 주차 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차 후 2시간까지 1회 주차권 요금을 적용한다. 2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경과시간의 주차요금에 그와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4. 급지구분
   1급지 : 하동읍, 진교면 등 도시계획 지역에 한한다.
   2급지 : 1급지 이외의 지역에 한한다.
5. 위 요금은 승용차, 1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화물자동차 또는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1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15인승 이상 45인승 미만 승합 또는 버스, 2.5톤 이상 11톤 미만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2배
   나. 45인승 이상 버스 또는 11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 기준요금의 3배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4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경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 1대 시설면적 150㎡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4의2. <삭제 2005.3.10.조1076>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75㎡당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의 경우에는 0.7대 이상)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8. 창고시설,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9.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하동군 공고 제2016-640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보완을 요구한 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제안서 제출을 철회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이에 주민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제안한 내용에 대한 처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제안자가 보완기간 내에 제안서를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 이미 제출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생 략)	제8조(제안의 보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6-641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회관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을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삭제하여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는 규정 삭제(안 제17조제3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 략) ③ 수탁자가 회관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하동군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받아야 한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6-642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는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이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11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삭 제>

하동군 공고 제2016-643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평가 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 또한 위원활동의 계속성 확보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포함(안 제2조제3항제1호)

○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안 제5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자”를 “호의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제3항제2호 중 “정통한 자”를 “정통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정한 자”를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② (생 략)	제2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중 민원과장, 재정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 ------ 호의 사람 ---------- ------- 사람으로 --.
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변호사, 부동산학전공 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 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 직원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자	2 . ---------- ---------- ---------- ---------- 정통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 ---------- 인정한 사람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기) ---------- 2년---------- -.

하동군 공고 제2016-644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납세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법 제80조제1항”으로 확대 규정(안 제24조제1호)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 ---------- ----------. --- ---------- ---------- ----------.
1. 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1. 법 제80조제1항 ----------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6-645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매각교환 등을 위해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2015.2.16.공포・시행)됨에 따라

○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감정평가 의뢰 대상을 확대하고자함.

3. 주요 내용

○ 공유토지 분할 평가시 의뢰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개정(조례안 제65조)

○ 가격평정조서에는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에서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서”로 개성(규칙안 제18조제2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 후단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할) ---------- ---------- ---------- ---------- ----------. ---- ---------- ---------- ---------- ---------- ---------- 감정평가업자----------.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가격평정) ①(생 략)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가격평정) ①(현행과 같음) ②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하동군 공고 제2016-646호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을 완화하여 도로공사 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3. **주요 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 「도로법」 제64조, 제67조 → 「도로법」 제91조(안 제1조)
-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 「도로법」 제2조(안 제2조)

○ 부담금 납부기한을 “허가시”에서 “공사개시전”으로 개정(안 제24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를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허가시에”를 “공사개시 전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91조----------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3. (생 략)	제2조(정의) ---------- ----------. 1. ----------제2조 ---------- ---------- ----. 2.·3. (현행과 같음)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생략) ② 사리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면적 및 양을 초과할 시는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추가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3조(부담금 등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사개시 전에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6-647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별표 7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사유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서 일시 적치한 자”로 규정(안 제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제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군수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조(과태료 부과와 징수) ① ----------. ----------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 조립·수리·용접 등의 작업을 하는 행위	<삭 제>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16-648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분쟁조정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자연스러운 문체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8조제5호)

○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10분의 1”이상의 동의로 완화하고 추가요구 서류를 삭제(안 제1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 중 “검사”를 “검사하게”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5호 중 “당사”를 “당사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분쟁대상	아파트명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위 치		동수/세대수	동 세대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조합			
조정신청 내 용				
신청취지 및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대표자 선정(1명 이내)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군수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감독) ---------- ---------- ---------- ---------- ---------- --------- 검사하게---------- ---------- ---------- ---------- --------.
제17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를 받아 대표자 1명을 선정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1세대당 1명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어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로 한다)	<삭 제>
2. 대표자 선정(3명 이내)서류	<삭 제>
3.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삭 제>
제1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신청을 반려 또는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의 반려 및 종결)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조정기간 중 당사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 당사자 ----------

하동군 공고 제2016-649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 이유**

○ 주택개량 융자금 채권의 전액 상환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현행 조례와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3. 현행 조례 및 규칙,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규칙 제 호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하동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6-650호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등록한옥의 유효기간 중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등록한옥의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법령상 근거 없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 등록한옥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운 소유권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등록한옥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 규정 삭제 (안 제11조제4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등록) ① ~ ③ (생 략) ④ 등록된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하동군 공고 제2016-651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우리 군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사용자(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임대료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에도 행정청의 재량으로 반환 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손해배상 및 임대료 미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농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반환하도록 개정(안 제13조제3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 청구 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를 “대한 책임은 「민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임대료의 반환) ① ----------. ---------- 반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② (생 략) ③ 임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임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민법」에 따른다.

하동군 공고 제2016-652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 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정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군수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 체육시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 설치자인 우리 군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책임을 시설 사용자가 지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손해배상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정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군수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 삭제(안 제16조제2항)

○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19조제2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하동군(참조 : 기획조정실, 전화 880-2973, FAX 880-2019, e-mail bawiseom@korea.kr)에게 **【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아니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를 “대한 책임은 「민법」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아니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생 략)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9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민법」에 따른다.

하동군 공고 제2016 - 582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18일

하 동 군 수

1. 목 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행정예고 기간 : 2016. 5. 18. ~ 6. 07.(20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16. 5. 18. ~ 6. 07.(20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5. 관련근거
   -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저수지명	위 치	규 모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구역면적 (㎡)	총저수량 (㎥)	제당고 (m)			
성평	경남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677 일원	70,000	10,900	14.0	하동군수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	

7.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경남 하동군 읍내리 군청로 23 건설교통과
- 전 화 : 055) 880-2514
- 팩 스 : 055) 880-25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 임 : 주민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주 민 의 견 제 출 서

공 고 명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저 수 지 명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재해위험저수지 지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공고 제2016 - 623호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오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가 격 기 준 일 : 2016. 01. 01
2. 결 정·공 시 일 : 2016. 05. 31
3. 결정·공시 필지수 : 281,490필지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읍·면	결정필지수
하동읍	23,622필	고전면	20,628필	북천면	16,386필
화개면	23,267필	금남면	24,995필	청암면	15,934필
악양면	29,602필	진교면	25,122필	옥종면	31,736필
적량면	19,696필	양보면	19,118필	금성면	14,318필
횡천면	17,066필				

4. 결정·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당 가격
(토지지번별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군청 민원과 및 읍·면 사무소에 비치)

5. 이의신청 및 처리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6. 05. 31 ~ 06. 30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서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우편 접수 가능
(전자민원)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온라인 민원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필지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알려드리며,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하동군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 부동산평가담당부서(055-880-212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년 5 월 31 일

하 동 군 수